

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손자용

#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

## 검토보고서

#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12월 13일 최병윤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2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 2. 제안이유

- 민선 5기 도정 목표인 “함께하는 충북”을 실현하고, 진정한 지방분권과 참여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 도민의 발언권과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민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며, 도민이 충북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결정 및 집행 까지 권리로서의 참여를 보장하고, 이의 실현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규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도지사의 책무(안 제4조)
  - 도민참여의 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하고, 연1회이상 도민참여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한 후 의회에 보고
  - 도민참여 제도의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발굴과 홍보 및 도민참여 공헌자에 대한 시상

○ 회의공개의 원칙(안 제6조)

-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회의 개최 후 2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

○ 위원회의 도민참여(안 제7조)

- 위원회 구성 시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 절차를 통한 도민 참여 보장
- 여성, 장애인,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
- 위원회의 공무원 비중이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함

○ 도민정책토론 청구제(안 제9조)

- 선거권을 가진 충청북도민 300명의 연서로 청구

○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0조)

-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

○ 도민의견조사의 실시(안 제12조)

-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- 조사 후 즉시 공표하며, 20일 이내에 조사결과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

○ 도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3조)

- 10명 이내로 도민참여 연구회 구성

## 4. 검토의견

금번 제정조례안은 민선 5기 도정 목표인 “함께하는 충북” 실현을 위해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도민참여 보장 및 이의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
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6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,
-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도민참여를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9조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충청북도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도민정책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
- 안 제10조에서는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부활 20주년을 맞는 해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의미있는 조례로서 현재 서울특별시, 대전광역시, 광주광역시, 제주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, 순수 광역도로서는 최초의 조례이며,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 1부. 끝.